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1,

공증  
인가

한일합동법

(전화) 02-752

(팩스) 02-755-7777

[별지 제33호서식]

등부 2017년 제 3426 호

# 인 증 서

## 책임준공확약서

모아핀테크대부 주식회사 귀중

본 책임준공확약서(이하 "본각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3-31외2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주)송산에 시(이하 "차주"), 여신회사로서 모아핀테크대부 주식회사(이하 "여신회사"),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상종현 회사 대표이사 이: (이하 "연대보증인") 사이에 2017년 7월 1일 체결된 금, 삼역사천만원 대출약정(이하 그 수정,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각서 합니다.

아래 서명란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시공사는 여신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책임준공을 보증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확약합니다.

### 1. 정의

위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를 제외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확약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2. 책임준공확약

(1)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성공사비의 지급 지연 등 기타 도급공사인의 계약 위반, 차주에 대한 부도 사유의 발생, 시공상의 민원, 본 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고,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대출시 정한 준공일(이하 "준공일")까지 본 물건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본건 건물의 사용승인(본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포함함)을 득하고, 본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전하게 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시공사는 본건 건물의 완공 이전에 본건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 이후 지체 없이 시공사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는 여신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시공사의 부담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시공사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

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 건 건물을 책임 준공할 것이며, 증액된 공사대금을 여신회사의 본건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받을 것입니다.

(4) 시공사는 대출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승인하며, 여신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공사도급 계약 기타 사업계약을 변경, 해지,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여신회사의 대출원리금상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3 법령 및 계약의 준수



시공사는 본 건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공사도급계약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제반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 4. 피용자 및 하도급 등에 대한 책임

시공사는 본건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i) 시공사의 피고용인과 하도급 업체의 선임, 감독, (ii) 피고용인과의 노사분쟁, (iii)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및 (iv) 건설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 5. 효력발생

본 확약서는 본 확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약정상 여신회사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동 확약서 상의 권리와 지위를 동일하게 승계하여 보유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인합니다.

2017년 7월 28일

확약인

대상종  
대표이사 이득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1,  
1층  
[별지 제35호서식]

공증  
인가

# 한일합동법률사무소

(전화) 02-752-8  
(팩스) 02-755-7

등부 2017 년	제 3426호
인 증	
위 책임준공확약서 ----- 에 기재된	
확약인: 대상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의 대리인 " " 은 -----
-----	
-----	
-----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	
-----	
-----	
2017년 07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한일합동법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김 기 수
) 	